

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

제8차 개정 2022. 10. 6. 규정 제2070호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생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휴가의 종류 및 신청) ① 학생의 휴가는 **병가, 특별휴가, 공결**로 구분한다.(조명 개정 2019.6.26.)

② 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호 서식에 의한 “휴가신청서”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(원)에 제출하여야 한다.(신설 2019.6.26.)

제3조 삭제(2014.8.28.)

제4조(병가) 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(원)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**병가**일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 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14.8.28. 개정 2019.6.26.)

1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**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**
2.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**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**(개정 2014.8.28. 개정 2019.6.26.)

제5조(특별휴가) 학생이 **경조사**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학(원)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개정 2019.6.26.)

제6조(공결) 공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(원)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.(개정 2019.6.26.)

1. **총장의 추천**으로 각종 행사(학·예술, 운동, 훈련, 회의 등)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
2. **병역법**에 규정된 각종 **검사**에 응할 때
3. **병역법**에 규정된 각종 **징·소집(복무기간 제외) 및 제훈련**에 응할 때
4.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
5. **법정투표**에 참가할 때
6.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
7.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

제7조(휴가기간의 출석인정)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**총출석시수의 1/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**한다.(신설 2019.6.26.)

부 칙(규정2070호, 2022.10.0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(개정 2019.6.26., 2020.10.21., 2022.10.06.)

구분	대 상	일수	구분	대 상	일 수
결혼	본인	3(2)	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(2.5)
	자녀	1	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(2.5)
출산	배우자	3(2)	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(2.5)
	본인	30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3(2.5)

주1) 휴가기간 중 토요일,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,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주2) ()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.

※ (유의사항) 출석은 **최소 2/3이상** 이어야 되고, **출석시간 + 휴가기간(시간)은 3/4이상** 되어야 됨

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(공결 병가 등) 신청 방법 안내

<2022.10.31. 학사지원과>

□ 학생 휴가 개요

- 근거규정: 「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」
- 휴가 종류: **공결, 병가, 특별휴가**
- 승인(허가)권자: 소속대학(원)장
-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
 - 병가: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약처방전 등
 - 공결: 병역신체검사 통지서, 예비군훈련 통지서, 관련 공문 등 ※ 「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」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
 - 특별휴가: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, 출생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
□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 신청 방법

- 휴가 대상: **공결, 병가, 특별휴가**
- 신청 방법: **통합정보시스템 ‘휴가처리’ 메뉴에서 신청(증빙서류 업로드 필수)** ※ 자세한 신청 방법은 ‘**학생휴가 신청 매뉴얼(학생용)**’ 참고
- 승인 절차: (학생) 휴가 신청 → (소속학과) 확인 및 승인 → (단과대학) 확인 및 최종승인